

소백산국립공원(북) 제2연화봉대피소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(공고)

소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: 소백산국립공원(북) 제2연화봉대피소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관리용 CCTV 추가설치
2. 설치목적: 제2연화봉대피소 이용 탐방객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, 시설안전, 산불예방 등
3. 근거법령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4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 - 가. 설치장소: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-1(제2연화봉대피소)
 - 나. 촬영범위: 소백산국립공원(북) 제2연화봉대피소 내·외부
 - 다. 촬영시간: 24시간
 - 라. 추가수량: 6대 ※기설치: 8대
5. 공고기간: 2022. 6. 24.(금) ~ 2022. 7. 13.(수), 20일간
6. 의견제출: 2022. 6. 24.(금) ~ 2022. 7. 13.(수), 20일간
7. 공고방법: 공단 홈페이지
 - 가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나. 제출서식: 붙임 참조
 - 다. 제 출 처: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(죽령분소) 및 (제2연화봉대피소)
 - 주소: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17
 - 전화/팩스
(죽령분소) Tel. 043-422-7181 / Fax. 043-422-7183
(제2연화봉대피소) Tel. 043-423-1439 / Fax. 043-421-1439
 - 라. 기타사항: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- 붙임 1. 설치 위치도 및 사진 1부.
2. 의견제출서(양식) 1부. 끝.

2022. 6. 24.

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

첨부 1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설치 위치도



1취사장, 2취사장 일원(외부)



위치도



2취사장(내부)



위치도



2취사장 인근 데크(외부)



위치도



야외 데크 방면(외부)



위치도



탐방객 출입구(내부)



위치도



격리실 방면(내부)



위치도

첨부 2**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설치 의견제출서**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- 소백산국립공원(북) 제2연화봉대피소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공고)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